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Subject: Newsflash of MSC 100

제100차 해사안전위원회(이하 "MSC"라 칭함)가 2018년 12월 3일에서 12월 7일까지 IMO 본부에서 개최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MSC 100차 주요 사항 및 요약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번 회기에 채택된 SPS 코드에 대한 개정사항들은 MSC 436(99)에 의해 채택된 SOLAS 4장 및 부록(증서)에 대한 개정의 발효와 더불어 2020년 1월 1일부터 발효하게 됩니다.

1. 강제 문서 및 비강제 문서들에 대한 개정사항의 채택 (의제 3)

1.1 2011 ESP Code 개정

MSC 위원회는 MSC 99 에서 2011 ESP Code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음을 상기하고, IACS 와 사무국에서 제안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개정 초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개정초안에 사용된 언어가 IMO 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아님을 (즉, is to/are to 가 shall 대신 사용됨) 인지하였다. 참고로, 이러한 용어의 사용은 향후 모호함을 불러 일으키고 다른 협약과의 불일치를 초래하기 때문에 향후 IMO 규칙 개발에 악영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2011 ESP Code 에 대한 개정사항들은 이번 회기에 채택될 예정이었고, 또한 ESP Code 통합 버전이 SDC 6 차에서 완성되어 MSC 101 차의 승인을 거쳐 31 차 총회에서 2019 ESP Code 로 최종 채택 후 2011 ESP Code 를 대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논의 끝에 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2011 ESP Code 개정초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IACS 에 사무국과 함께 회기 중간에 "is to"와 "are to" 대신에 "shall"과 "should"를 사용한 ESP Code 에 개정 초안 수정본을 준비하도록 하여 MSC 101 차에서 채택하기로 했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1.2 SPS Code 개정안

MSC 위원회는 MSC 99 에서 SOLAS 4 장과 부록 (증서)에 대한 개정안이 채택되면서 이와 더불어 2008 SPS Code 의 개정이 있었고, 같은 맥락에서 사무국으로 하여금 이전에 MSC/Circ.739 과 MSC.183(79) 결의안으로 승인/채택되었던 SPS Code 개정내용을 포함한 SPS Code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사무국에 요청하였음을 상기하였다. MSC 100 은 문구상의 오류를 수정한 SPS Code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이번 회기 동안 이를 채택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2020 년 1 월 1 일 발효될 예정이다.

2. 자율운항선박(MASS)의 사용에 관한 규정범위 검토작업 (의제 5)

MSC 위원회는 금번 회기 중 MASS 에 관한 회기간 통신작업반 (intersessional correspondence group)의 보고서 (MSC 100/5) 및 그 외 다양한 회원국들 및 NGO 들이 제출한 코멘트 문서들을 검토하였다.

MASS 에 관한 작업반(Working Group, WG)이 개설되어 제출된 문서들 중 MSC 100/5 (MASS 통신작업반 보고서), MSC 100/5/4 (MASS 통신작업반 보고서에 대한 사무국의 코멘트) 및 MSC 100/5/8 (MASS 통신작업반 보고서에 대한 미국의 코멘트 문서) 등을 참고하여, 규정범위 검토작업 (이하 'RSE'라 칭함)에 관한 프레임워크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반에서는 시간이 허락한다면 MSC 100/5/2 (MASS 선박의 시운전에 관한 잠정지침, 노르웨이 및 BIMCO 제출) 및 MSC 100/5/3 (MASS 시운전에 관한 잠정지침 개발관련 제안, 대한민국 제출) 등을 고려하여 MASS 시운전에 관한 잠정지침 개발과 관련된 원칙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작업반에서의 논의를 통하여 RSE 에 대한 프레임워크 및 RSE 에 사용될 검토 서식을 부분적으로 개정하였으며, 특히 자율화의 정도 (degrees autonomy), 검토 대상문서 및 방법론 등에 관한 항목들을 논의하고 개정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RSE 에 관한 작업방식 및 절차를 논의하였는데, 특히 RSE 를 위해 향후 사무국이 개발할 웹 플랫폼의 사용과 RSE 의 작업 계획 및 절차 등을 심도 깊게 논의하였다. 금번 회기 논의결과 결정된 계획표에 따르면 RSE 는 2020 년 5 월에 개최될 MSC 102 차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RSE 를 2020 년까지 완료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2019 년 9 월에 MASS RSE 를 위한 MSC 회기간 작업반 (intersessional MSC Working Group) 회의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조건으로 개최하기로 동의하였다.

RSE 와 관련하여, 1 단계 최초 검토 (즉, IMO 협약 내의 규칙/규정들이 MASS 에 적용되는지 적용되지 않는지의 식별)는 자원하는 회원국들과 관심 있는 국제기구들이 협력하여 수행하도록 하였다. 2 단계 최초 분석 (즉, MASS 운영을 다루는 가장 적절한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분석)은 1 단계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해당 검토를 수행하였던 자원한 회원국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분석은 각각의 규정 별로 수행하는 1 단계와는 달리 좀 더 높은 단계인 각 협약 별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MASS 시운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과 관련하여, 작업반은 이러한 지침에 대한 9 가지 원칙에 동의하였는데, 이러한 지침은 하나의 문서이어야 하며, 너무 기술적이지 않고 일반적이어야 하고, 목표에 기반하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19 년 9 월에 개최될 MSC 회기간 작업반에서 RSE 관련 작업이 전적으로 수행될 예정이고, 따라서 다음 MSC 101 차 회기 시에는 RSE 수행과 관련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으므로, 동 지침은 2019 년 6 월 개최될 MSC 101 차 회의 시에 완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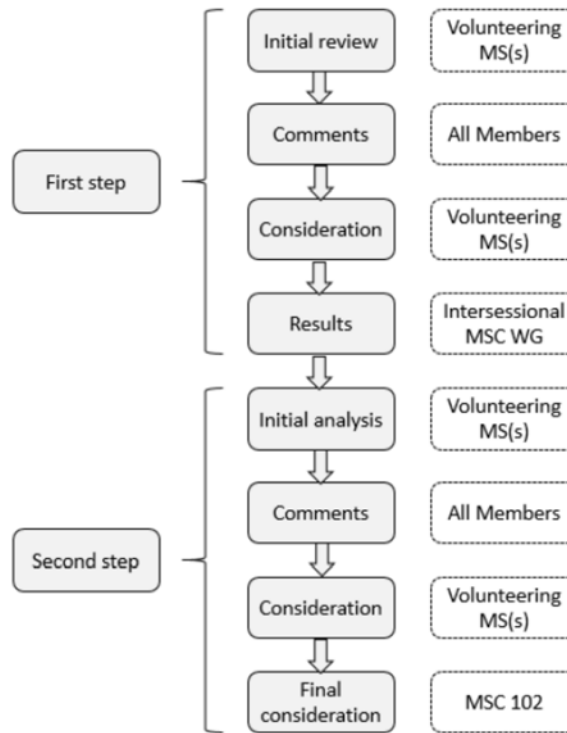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RSE 시행계획표>

Timeline for the regulatory scoping exercise

Action	Deadline	Who?
Upload of the initial review of IMO instruments	April 2019	Volunteering Member State(s)
Commenting stage related to the initial review	May/June 2019 (two months)	All IMO Members
Consideration of comments and presentation of results	July 2019 (one month)	Volunteering Member State(s)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first step	[2 to 6 September 2019]	[Intersessional MSC working group]
Analysis of the most appropriate way of addressing MASS operations (second step)	September/October 2019 (two months)	Volunteering Member State(s)
Commenting stage related to the initial analysis	November 2019 (one month)	All IMO Members
Consideration of comments and presentation of results	December 2019/January 2020 (two months) – deadline for submissions to MSC 102	Volunteering Member State(s)
Final consideration	May 2020	MSC 102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3. 목표기반 선박건조기준(GBS) (의제 6)

터키선급의 GBS 초기 감사

MSC 위원회는 감사팀이 발견한 부적합 사항이 시정되고 관찰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 진다면 터키 선급의 규칙이 GBS 기준에 만족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감사팀의 관찰사항과 특히 confidential self-assessment 와 rule linkage table 을 포함하여 터키 선급에 의해 제출된 문서가 IACS 회원들이 제출한 것과 거의 동일하여 이러한 사실이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GBS 정신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시간의 토론 끝에 기국들의 대다수가 터키 선급의 규칙이 GBS 기준에 부합한다는 감사팀의 권고를 승인하는 의견을 지지하였다.

12 개 IACS RO 들의 GBS 감사 유지보수

MSC 위원회는 GBS 지침에 따라 자신들의 규칙이 GBS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요청한 12 개 RO 들의 감사 결과에 대한 GBS 유지보수 최종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감사 팀이 2 개의 CSR 관련 부적합 사항과 4 개의 관찰사항을 식별하였음을 인지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DNV-GL 을 제외하고는 모든 IACS 의 RO 들이 GBS 기준을 만족한다고 결론지었다.

위원회는 DNV-GL 을 제외한 모든 IACS RO 들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가 GBS 기준에 지속적으로 부합함을 나타냄을 확인하고 식별된 부적합이 시정되었다는 데 동의하였다.

DNV-GL 의 선박건조 규칙에 대한 고려

MSC 위원회는 DNV-GL 의 경우는 GBS 감사를 위한 최초 검증이 신청된 시기에 DNV 와 GL 간의 합병으로 인해 DNV-GL 선급이 새로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생긴 특별한 경우라고 인지하였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4. 전문위원회 결과 보고서 (의제 8 ~ 12)

4.1 LSA Code 6.1.1.3 항의 개정 초안 (의제 9, SSE 5)

MSC 위원회는 생존정 검용이 아닌 전용 구조정의 수동 진수에 관한 LSA Code 6.1.1.3 항의 개정 초안에 대하여 해당 요건의 적용일을 명확히 하자는 일본의 제안과 “선측에 대한 구조정을 고박하는 수단”에 내포된 의미의 모호함 및 적용일자에 대한 IACS의 코멘트를 함께 검토하였다.

논의 끝에 위원회는 LSA Code에 대한 개정 초안을 이번 회기에서 승인하는 데에 합의하였고 이 개정안은 MSC 101 차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위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SSE 6차에 금번 회의 논의 중에 발견된 우려에 대하여 추가로 논의할 것을 지시하였고 관련 회원국과 기구들에게 이와 관련한 제안을 SSE 6차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4.2 로로구역 및 특수분류구역을 위한 고정식 물기반 소화장치의 설계 및 승인에 대한 수정된 지침에 대한 개정 초안 (MSC.1/Circ.1430) (의제 9, SSE 5)

MSC 위원회는 MSC.1/Circ.1430 지침의 개정 초안과 함께 선박 설계자들에게 설치일에 앞서 요건을 만족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에 충분한 시간을 주기 위하여, 고정식 물기반 소화장치의 설계 및 승인에 대한 수정된 지침에 대한 개정 초안의 적용일을 2018년 7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적용일에 대한 논의 끝에, 위원회는 수정된 지침 초안의 적용일을 2021년 1월 1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MSC.1/Circ.1430/Rev.1을 승인하였다.

4.3 선박용 하역설비 및 앵커용 윈치에 대한 새로운 요건의 적용 범위 (의제 9, SSE 5)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MSC 위원회는 SSE 5차에서 제안한 3가지 선택안을 고려하여 (즉, 첫 번째로서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적용 범위 구성, 두 번째로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 및 포함되어야 할 항목으로 적용 범위 구성, 세 번째로서 제외되어야 할 항목으로 적용 범위 구성) 선박용 하역설비 및 앵커용 윈치에 대한 새로운 요건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위원회는 제외되어야 할 항목 및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모두 사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에 합의하고 OLAW(Onboard Lifting Appliances and Winches)와 관련하여 관련된 SOLAS 협약의 개정안을 작성할 때에 이를 고려하도록 하고, 더불어 오프쇼어 건설 선박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확히 하여 SSE 전문위원회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이뤄지도록 지시하였다.

4.4 LSA Code 4.4.8.1 항의 통일 해석 (의제 9, SSE 5)

MSC 위원회는 두 개의 독립된 추진기관을 가진 구명정이 잔잔한 바다에서 선수 방향을 유지하기 위한 부양성 노(Oars)와 관련된 부속품(쓰울핀, 크릿치 또는 이와 동등한 장비)을 면제하도록 하는 LSA Code 4.4.8.1 항의 통일해석에 관한 MSC Circular 초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4.4 절 – 구명정, 일반

4.4.8.1 항

“두 개의 분리된 엔진, 축계, 연료탱크, 배관 및 기타 이에 부수되는 설비들로 구성된 두 개의 독립된 추진시스템을 갖춘 구명정에 대해서는 LSA Code 4.4.8.1 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구명정은 LSA Code 4.4.8 항을 만족해야 한다.”

일본은 4.4.8.1 항에 대하여 통일해석과 LSA Code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개정을 제안하였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논의 끝에 위원회는 일본의 제안을 받아들여 통일해석 초안을 승인하고 이와 더불어 초안과의 일치를 위해 LSA Code 에 대한 개정 초안을 함께 승인하였다.

4.5 기록부에 대한 개정안 (SOLAS 의 부록 Form C, E 및 P) (의제 9, SSE 5)

MSC 위원회는 중국이 SOLAS 부록에 포함된 증서 서식들 중 Form C, E 및 P 의 기록부 8.1 항에 있는 "Rudder, propeller, thrust, pitch and operational mode indicator"을 해석하는 데에 있어서 인지된 불일치를 부각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주석(foot note)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위원회는 논의 끝에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여 해당 증서 서식들에 대한 개정 초안을 승인하였다.

4.6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적용에 대한 임시 지침(의제 11, CCC 5)

MSC 위원회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의 적용에 대한 임시 지침에 대한 MSC Circular 를 승인했다. 이와 더불어 위원회는 한국 대표의 제안에 따라 IGC 및 IGF Code 들에 임시지침을 참고하도록 하는 주석을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4.7 IMO 협약에서 연료유의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한 기존 규칙의 효율적인 이행 (의제 8, PPR 5)

MSC 위원회는 최근에 MARPOL 부속서 6 에서 다루지고 있는 저유황 연료유의 안전 문제가 MSC 에서 다루져야 하고 SOLAS 에도 이러한 내용이 삽입되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위원회는 이러한 제안해 대해 대체적으로 승인하고 MSC 의 2 개년 의제에 2021 년을 완료 목표 년도로 하여 "연료유의 사용에 관한 선박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의 개발"에 대한 작업을 포함하기로 하였다.

위원회는 병커 공급선의 등록을 유지하는 요건이 MARPOL 에서 다루야 할 문제로 보고 병커 공급선의 면허 제도가 다루져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5. 기타사항

5.1 극지해역에서 운항하는 SOLAS 비적용 선박의 안전 방안

MSC 위원회는 SOLAS 5장에 한정하여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강제적인 안전 대책을 고려하는 문제와 SOLAS 4 장 및 5 장에 한정하여 300 톤에서 500 톤 사이의 화물선에 대한 강제적인 안전 대책을 고려하는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을 인지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아직까지 어떠한 문서도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위원회는 지금 단계에서는 SOLAS 4 장 및 5 장 그리고 POLAR Code I-A 에 대한 개정을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SOLAS 비적용 선박에 대한 SOLAS 선박의 기존의 강제 규정 및 권고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SOLAS 14 장 및 POLAR Code I-B 에 대한 개정안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다.

5.2 다중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의 고수위 경보 및 알람에 대한 SOLAS 요건

MSC 위원회는 미국의 제안대로 새로운 SOLAS 요건을 개발하여 SOLAS II-1/25 규칙에 있는 단일 화물창을 가진 화물선에 설치하도록 한 화물수위감지기 요건을 다중 화물창을 가지는 신조 선박에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이 제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SDC 전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5.3 구명설비에 부착되는 역반사 물질의 축진 내후 시험

MSC 위원회는 표제 건과 관련하여 MSC 100/19/4 문서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문서는 역반사 물질의 축진 내후 시험에 새로운 기술의 적용을 허용하기 위해 구명설비의 역반사 물질의 사용과 설치에 관한 A.658(16)에 대한 결의안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러한 제안이 제출된 배경은 특히, 기존 결의안의



Briefings of IMO Meeting

MSC 100(3 Dec. ~ 7 Dec. 2018)

No. IMO-00014-2018

BRIEFING STATUS

Flash

Final

Briefings of IMO Meeting are sequentially released by 2 steps as *Flash* - *Final*.

4.10 항에서 "carbon arc" 방법을 참조하도록 한 것이 최근에는 주로 "xenon arc" 장치를 이용한 시험기구와 방법으로 바뀐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협약업무팀장

담당자:

허강이 책임검사원

Convention & Legislation Service Team

Tel: +82 70 8799 8322

Fax: +82 70 8799 8339

E-mail: convention@krs.co.kr

Disclaimer

Although all possible efforts have been made to ensure correctness and completeness of the contents contained in this information service, the Korean Register of Shipping is not responsible for any errors or omissions made herein, nor held liable for any actions taken by any party as a result of information retrieved from this information service